

# 산업체위탁교육 운영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 31조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선발기준)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무 중이 자로 한다.

② 위탁생은 당해 산업체에서 추천하여 본 대학에서 별도로 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 위탁생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지원할 수 있으나, 가급적 산업체 근무직종과 연계지원을 권장한다.

제 3 조 (위탁형태) 위탁형태의 기본형태는 산업체의 구성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① 단독위탁 -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계열 및 학과별로 위탁

② 연합위탁 - 둘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계열 및 학과별로 위탁.

제 4 조 (설치학과)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의하되, 산업체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학과와 관련된 별도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 5 조 (위탁학생 수 및 학급편성)

① 교육시설 및 교원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 대학이 자율 결정하되,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(주·야간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에는 많은 쪽)의 범위 안에서 모집하되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을 적용한다.)

② 위탁생은 20명 이상의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는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% 범위내에서 혼합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6 조 (교육과정의 편성운영) 위탁생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에 대하여 적용할 교육과정은 본 대학과 위탁산업체가 협의하여 새로이 개발, 운영할 수 있으며, 이때의 교육과정은 본 대학에 개설된 학과계열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하고 유사과정도 본 대학의 여건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.

제 7 조 (재입학)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써 자퇴 및 제적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.

① 재입학은 퇴학 및 제적 학년 해당학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, 해당학과가

폐과 되었을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하다.

② 재입학은 해당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.

③ 재입학의 전형은 제출한 서류에 의하고, 서류의 미제출시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재입학원 1부.
2. 성적증명서 1부.
3. 학과 교수회의 추천서 1부.
4. 산업체위탁교육 의뢰서 및 계약서 각 1부.
5. 재직증명서 1부.
6. 국민연금, 원천징수확인서, 건강보험확인서 중 1부.

제 8 조 (휴학)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할 수 있다.

① 휴학기간은 학기 시작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재학 중에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
② 휴학은 학장이 정한 등록기간 중에 휴학함을 원칙으로 하되, 개강 전까지는 미등록휴학이 가능하며, 등록을 필한 자에 한 하여는 수업일수 4분의1까지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수업일수 4분의1선 이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.

④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휴학원 1부.
2. 재직증명서 1부.

제 9 조 (복학) 휴학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을 할 수 있다.

① 휴학 기간이 완료된 자로서 휴학 당시의 학년 학기로 복학한다.

② 복학원의 제출시기는 학장이 정한 등록기간 중으로 하며, 복학원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개강 후 4주까지 복학을 하여야 한다. 미복학시에는 제적처리 된다.

③ 복학하고자 하는 해당학과가 폐과 한 경우 복학이 불가하며, 자퇴원을 제출한다

④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친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.

1. 복학원 1부
2. 재직증명서 1부.
3. 기타 산업체위탁교육생 자격확인 서류 1부.

제 10 조 (제적) 우리대학의 재학중인 학생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에 재학 중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

(단.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변동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)

2. 매 학기초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

3.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(위조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부정행위를 한 자

4.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.

5. 정당한 이유없이 4주이상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

6.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.

제 11 조 (교과목이수)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는 본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의 교과목 이수는 당해 학과 교수회의 심사에 의하여 학장의 승인을 거쳐 그 해당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계약 및 경비부담·납부방법)

① 위탁교육실시를 위해서는 산업체의 장과 학교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의 책임 하에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괄 납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③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당해 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운영)

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고, 위원은 위원수의 1/2이상을 외부관련 인사로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
제 14 조 (기타사항)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에 의한다.

제 15 조(학칙준용) 이 규정 이외의 학사운영은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